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방 송 통 신 발 전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신설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1819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절차(안 제28조의3, 안 별표1 신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절차 등) ①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3(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 절차 등) ①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u> <u>②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u>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⑦ 법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
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
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로 한다.

[별표 1]

과징금 부과 기준(제28조의3 관련)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40조의4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분	부과기준율(단위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
중대한 위반행위	1~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이내

비고 :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의 범위, 위반행위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의 직접적 관련성, 통신시설의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예상 피해규모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이상으로 광범위한 경우,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핵심적·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상위등급의 통신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예상 피해규모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특별자치시(이하 “시·군·구”라 한다) 단위 이상이나 시·도 단위 보다는 작은 범위인 경우,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중위등급의 통신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예상 피해규모가 시·군·구 단위보다 작은 범위로 국지적인 경우,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하위등급의 통신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등

2) 가중·감경

기준금액에 법 제40조4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비용절감의 규모, 위반행위의 지속 또는 개선 여부,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연 락 처	(02) 2110 - 1429